

부산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321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변론 종결2024. 3. 26.

판결 선고2024.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8,417,209원 및 이에 대한 2022. 3.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25,425,309원)1)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17,209원과 이에 대한 2022. 3.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25,425,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29. 양산시 E 지상건물 1층 중 일부인 193.6㎡의 상가를 전대차 기간 2020. 2. 1.부터 2020. 7. 31.까지,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D에게 전대하였고, 2020. 7. 31.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는 2020. 9.분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2. 3. 25.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28,974,19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21. 7.분부터 위 상가 인도일까지 관리비 1,093,0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17876호로 연체 차임 등 20,067,2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지급명령절차에서 소송절차로 회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7128호)되었으며, 위 법원은 2023. 3.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28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2. 12. '2022. 3. 25.까지의 연체 차임 및 미지급 관리비 합계 30,067,209원(= 28,974,190원 + 1,093,019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과 장판비용 165만 원'을 공제하여, "D는 원고에게 18,417,209원(= 30,067,209원 - 1,000만 원 - 165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4.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5. 2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D와 사이에 G.생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와 D는 2022. 1.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와 D는 2022.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22년 제385호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합의 약정서

갑: D

을: C(피고)

1. 갑과 을은 부부로서 슬하에 1남(G.생)을 두고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2022. 1. 17.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2021호협5034)을 하였습니다.

2. 을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으나 당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거론할 경향이 없었으므로, 현재 을의 입장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갑과 을 합의 하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2031. 6. 27.)까지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갈음으로 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H아파트 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를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3. 갑은 위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이전 시에 갑은 현재 위 부동산에 경료 되어 있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갑의 책임 하에 해제 말소하며 을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근저당권 채무(주식회사 J)를 승계기로 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음으로써 갑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사. 피고와 D는 2022. 9. 1. 피고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900만 원에 매수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억 1,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22.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2.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D는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D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지 않았는바, D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D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면서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양육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D와 피고는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약 9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23. 4.경에는 D가 운영하던 'K'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D의 협의이혼신고는 가장이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러한 양육비 합의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3) 설령 D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합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18,417,209원 및 이에 대한 2022. 3.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돈 합계액[= 25,425,309원{= 18,417,209원 × 19% × (2 + 1/366)},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피고는 D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추후 정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D는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D가 양육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D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D가 외삼촌인 L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실 및 원고와 사이에 D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일은 2020. 1. 29.이고, D는 2020. 9.경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D가 2022.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미지급 관리비 합계 30,067,209원인 사실,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D는 원고에게 18,417,209원(= 30,067,209원 - 1,000만 원 - 165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D에 대한 연체 차임 등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9. 1.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D와 피고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와 D는 부산가정법원 2021호협5034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2. 1. 17.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9, 12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도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한 사실, D는 2022. 10. 7.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D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에서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었는데,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 후에는 부산 해운대구 M에 'K'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피고와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설령 피고와 D의 협의이혼에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D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양자 간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와 D의 협의이혼신고가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3억 6,900만 원 중 인수하기로 한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피고는 부친이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사건에 제출된 피고와 D가 작성한 협의서에는 양육자가 피고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와 피고는 2022. 9. 1.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월 1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전받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J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설정되어 있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피고의 책임으로 말소하기로 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은 점, ② 피고와 D는 슬하에 G.생인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바, 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약 8년 10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어, 그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미성년 자녀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인 점, ④ 피고와 D가 2022. 1. 17. 협의이혼신고를 할 당시 양육비를 양육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얼마든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양육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17876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22. 10.

12.보다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D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형식이 매매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의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와 피고는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협의이혼신고 이후 D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인 2022. 9. 1. 기준 D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10년을 초과하였던 점, ② D와 피고는 G.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약 8년 10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양육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로 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아파트는 D, 피고,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였던 주거지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실질이 단순한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양육비의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혼급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혼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D와 피고가 정한 매매대금은 3억 9,600만 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22. 8.경 이 사건 아파트(1층)와 동일한 면적의 8층 아파트는 4억 500만 원에, 2022. 12.경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9층 아파트는 3억 8,000만 원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2023. 7. 25.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2층 아파트는 3억 2,300만 원에, 2023. 12. 12.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2층 아파트는 3억 1,800만 원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3억 6,9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2억 1,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은 2018. 6. 26.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 D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N은 부산지방법원 2022차전506호로 D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2. 14. 그러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N는 2022. 4. 11.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2022.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위 가등기를 책임지로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 피고는 N에게 대여금 중 미지급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3억 9,600만 원 중 피고가 양육비 등 이혼급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1억 7,600만 원(= 3억 9,600만 원 - 2억 1,000만 원 - 1,0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2022. 9. 1.부터 피고의 미성년 자녀(O생)가 성년이 되는 2031. 6. 27.까지 피고와 D가 정한 양육비인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한 8년 10개월분 양육비 액수는 1억 5,900만 원(= 150만 원 × 106개월)에 이르고, 월 양육비 150만 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와 D의 혼인기간이 10년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함으로써 1억 7,600만 원 상당의 이혼급부를 지급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호림

별지

1) 2022. 3.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26.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425,309원이다.